|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수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법석[2014]2호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수정에 대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이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 2월 20일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내린 결정과 개정 후 새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1)》(법석[2006]3호, 이하 《규정(1)》로 약칭) 제3조 중의 "제75조"를 "제74조"로 수정한다.  2. 《규정(1)》 제4조 중의 "제152조"를 "제151조"로 수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2)》(법석[2008]6호, 이하 《규정(2)》로 약칭) 제1조 제1항 중의 "제183조"를 "제182조"로 수정한다.  4. 《규정(2)》 제2조, 제7조 제1항 중의 "제184조"를 "제183조"로 수정한다.  5. 《규정(2)》 제11조 중의 "제186조"를 "제185조"로 수정한다.  6. 《규정(2)》 제22조 제1항 중의 "제81조"를 "제80조"로 수정한다.  7. 《규정(2)》 제23조 제2항, 제3항 중의 "제152조"를 "제151조"로 수정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2)》(법석[2011]3호, 이하 《규정(3)》으로 약칭)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회사 설립 후 회사, 주주 또는 회사의 채권자가 관련 주주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행위가 회사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주의 자본금 가장납입(자금포탈) 판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허위로 증가시켜 배당한 경우; (2) 채권·채무를 날조하여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3) 특수관계자거래를 통해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4)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기타 자금포탈 행위."  9. 《규정(3)》 제13조 제4항 중의 "제148조"를 "제147조"로 수정한다.  10. 《규정(3)》 제15조를 삭제한다.  11. 《규정(3)》 제24조를 제23조로 수정한다. 이 조항 중의 "제32조, 제33조"를 "제31조, 제32조"로 수정한다.  12. 《규정(3)》의 조문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  13. 이 규정 시행 후 종심이 끝나지 아니한 주주 출자 관련 분쟁 안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종심을 마쳤으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였거나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규정(1)》, 《규정(2)》, 《규정(3)》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 후 재공표 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的决定**  法释〔2014〕2号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的决定》已于2014年2月1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0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3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4年2月20日  根据2013年12月28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的决定和修改后重新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07次会议决定：  一、《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一）》(法释〔2006〕3号，以下简称《规定（一）》)第三条中的“第七十五条”修改为“第七十四条”。  二、《规定（一）》第四条中的“第一百五十二条”修改为“第一百五十一条”。  三、《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二）》(法释〔2008〕6号，以下简称《规定（二）》)第一条第一款中的“第一百八十三条”修改为“第一百八十二条”。  四、《规定（二）》第二条、第七条第一款中的“第一百八十四条”修改为“第一百八十三条”。  五、《规定（二）》第十一条中的“第一百八十六条”修改为“第一百八十五条”。  六、《规定（二）》第二十二条第一款中的“第八十一条”修改为“第八十条”。  七、《规定（二）》第二十三条第二款、第三款中的“第一百五十二条”修改为“第一百五十一条”。  八、删去《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三）》(法释〔2011〕3号，以下简称《规定（三）》)第十二条第一项，并将该条修改为“公司成立后，公司、股东或者公司债权人以相关股东的行为符合下列情形之一且损害公司权益为由，请求认定该股东抽逃出资的，人民法院应予支持：（一）制作虚假财务会计报表虚增利润进行分配；（二）通过虚构债权债务关系将其出资转出；（三）利用关联交易将出资转出；（四）其他未经法定程序将出资抽回的行为。”  九、《规定（三）》第十三条第四款中的“第一百四十八条”修改为“第一百四十七条”。  十、删去《规定（三）》第十五条。  十一、《规定（三）》第二十四条改为第二十三条。该条中的“第三十二条、第三十三条”修改为“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  十二、对《规定（三）》条文顺序作相应调整。  十三、本决定施行后尚未终审的股东出资相关纠纷案件，适用本决定；本决定施行前已经终审的，当事人申请再审或者按照审判监督程序决定再审的，不适用本决定。  《规定（一）》《规定（二）》《规定（三）》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